

2025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작물 종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지원자격 및 한도**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상토 제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https://www.naqs.go.kr\)](https://www.naqs.go.kr) 업무소개>농자재 관리>유기농업자재 공시조회
 - (자재원료)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
 - **2024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유기농업자재 신청할 경우,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관행 농가의 경우 '24년 6월까지 사후제출 가능
 - **친환경인증 농지는 2024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가에 한해 지원**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속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한도(ha당) :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녹비작물 종자**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 **2024년도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경영체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3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 및 작물 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제외**
 -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 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 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 지원조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작물) 보조 50%(국비20 시비30), 자부담 50%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보조 100%(국비100)

□ 선정기준

- 우선순위 :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 무농약 인증 농지(청년농) >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 일반 농지
- 친환경·GAP 인증 농가, 수출 농가, 농작물재해보험가입, 시 직영 로컬 출하 농가, 영농규모 등

2

추진일정

- 사업신청 : ~ 2024. 12. 31.
 - 신청장소 : 안산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지역농산물유통팀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약서, 토양검정결과서(해당 농업인),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해당 농업인)
- 대상자 선정 및 사업추진 : 2025. 1. ~ 11.
- 사업추진 실적 확인 및 보조금 집행·정산 : ~ 2025. 12.

* 현재 국비 예산은 정해지지 않았으며, 예산 확정에 따라 사업 진행 변경될 수 있음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택)	
			이메일		(휴대폰)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관행농업
세부 신청품목						
신청품목	제조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단위	신청수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소계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수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ml, 5ℓ, 20kg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주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항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작물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2. 관행농업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구분	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 총면적(㎡)									
<p>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안산시장 귀하</p>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용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목적달성시 1년)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서 약 서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녹비작물 종자, 천적을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안산시장 귀하

[참고 1] 자재원료

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p>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똥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p> <p>나) 퇴비화된 가축배설물</p> <p>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p> <p>라)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p>	<p>(1)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p> <p>(2) 사용 가능 물질 중 라)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 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p>
2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3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4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5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7	혈분, 육분, 골분, 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8	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쌀겨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9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을 포함한다]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10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11	오줌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12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 업체류 등 농산물·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13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14	구아노(Guano: 바다새, 박쥐 등의 배설물)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5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6	가)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 나무 숯 및 나뭇재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처리과정에서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17	가)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나) 석회소다 염화물 다)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 마그네슘 암석 마)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바)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 점토광물(벤토나이트·펠라이트·제올라이트·일라이트 등) 아)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자) 붕소·철·망간·구리·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18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19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_2O_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20	자연암석분말·분쇄석 또는 그 용액	(1)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21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 슬래그]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22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2)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가) 천연에서 유래할 것 (나) 엽면시비용(葉面施肥用)으로 사용할 것 (다)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3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24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25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6	이탄(泥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27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28	황	
29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	

	니아 추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3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제충국 추출물	제충국 (<i>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2	데리스(Derris) 추출물	데리스(<i>Derris spp.</i> , <i>Lonchocarpus spp.</i> 및 <i>Tephrosia spp.</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3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쿠아시아(<i>Quassia amar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4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라이아니아(<i>Ryania specios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5	넴(Neem) 추출물	넴(<i>Azadirachta indica</i>)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6	해수 및 천일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7	젤라틴(Gelatine)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8	난황(卵黃, 계란노른자 포함)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9	식초 등 천연산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	누룩곰팡이속(<i>Aspergillus spp.</i>)의 발효 생산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1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12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	물로 추출한 것일 것

13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14	밀랍(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15	동물·식물성 오일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16	해조류·해조류가루·해조류추출액	
17	인지질(Lecithin)	
18	카제인(유단백질)	
19	버섯 추출액	
2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1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22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1) 제1호가목1)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2) 물로만 추출할 것
23	가) 구리염 나) 보르도액 다) 수산화동 라) 산염화동 마) 부르고뉴액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4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25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26	에틸렌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27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28	규산나트륨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29	규조토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30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31	인산철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2	파라핀 오일	
33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34	과망간산칼륨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5	황	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36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37	천적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38	성 유인물질(페로몬)	(1)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2) 덧에만 사용할 것
39	메타알데하이드	(1)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2)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3) 덧에만 사용할 것
40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41	비누(Potassium Soaps)	
42	에틸알콜	발효주정일 것
43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44	기계유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45	응성불임곤충	